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확대 》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3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제221773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주거급여에 관리비 포함(안 제2조, 제8조의2 신설 등)	3
나.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 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안 제5조제2항 신설)	10

I.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제221773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25.

다. 회 부 일 : 2026. 3.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사람임.

그런데, 아동(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빈곤아동(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거주)이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정부는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및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함.

이처럼 주거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년층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함. 참고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양육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가구(약 68,300가구)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약 2,4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 중 하나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거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관리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주거급여에 관리비 포함(안 제2조,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u>수선유지비</u> ,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 ----- ----- ---수선유지비, 관리비-----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u>임차료</u> 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 ----- ----- ----- -----임차료와 관리비-----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u>임차료</u> 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범위, <u>임차료 및 관리비</u> ----- ----- -----.
<신설>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현행	개정안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조사)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차료 및 관리비-----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② (생략)	제11조(확인조사)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생략)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수급자가 지급받은 <u>임차료</u>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u>차임</u> (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생략)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임차료 또는 관리비</u> ----- ----- ----- <u>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u>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 ② (생략)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4. (생략) 5. 그 밖에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 ⑤ (생략)	③ ----- ----- ----- ----- ----- ----- -----. 1.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u>----- ----- ----- ----- ----- ----- 2.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u>----- ----- 3. 4. (현행과 같음) 5.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¹⁾은 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여의 종류를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解産給與), ⑥장제급여(葬祭給與), ⑦자활급여로 나누어 규정²⁾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³⁾과 현행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⁴⁾는 ‘주거급여’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주거급여의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리비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관리비는 임차료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비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2) 2000년 10월 종합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시 제도의 한계가 발생하자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맞춤형 빈곤정책을 마련하였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4)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용 부담을 유발하여 실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⁵⁾⁶⁾으로 체감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주거지출(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지출 등) 중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광열·수도비는 생계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공용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복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비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실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⁷⁾이 '26.4.1.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 보건복지부 최저주거비 및 가계동향조사 항목에서 주거비 항목은 실제 주거비(월세) 이외에 관리비(공용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조사

《 보건복지부 주요 조사항목 중 주거비 범위 》

보건복지부 : 최저생계비			가계동향조사 : 주거 및 수도광열		
분 류		주요 항목	분 류		주요 항목
최저 주거비 (임차)	임대료	(월세) 임대료/ (전세) 조달비용, 보증보험료, 인지세	주거	실제주거비	월세, 기타의제주거비
	보유비용	관리비(공용관리비, 공용부분 개별사용료)		주택유지 및 수선	수선재료, 설비·수리서비스
		그 외 주거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공동주택 관리비, 기타주거관련서비스

※ 자료: 국토교통부

6) 국가데이터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의 12가지 품목 중 하나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시설 사용, 유지 등과 관련된 품목(전세, 월세, 설비수리비, 공동주택관리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주택수선재료)을 ‘주거비’로 분류함.

7) 2204731 김도읍의원안, 2207600 박용갑의원안, 2209844 문진석의원안 등 3건을 통합·조정한 대안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 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생략) <u><신설></u>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상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8)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기준 1,230,834원으로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인 2,564,238원의 48% 수준으로 결정되었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4.~7. (생략)

【 2025년 및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026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8%)	20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2026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자료: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개정안은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최소 기준을 중위소득의 43%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사회성 등 발달 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주거환경에 대해 민감성이 높아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성인과 달리 아동의 경우 소득 창출이 어려우며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식주, 교육 등의 비용이 높아 아동 양육 가

정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주거환경이 어려운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와 같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최소 기준을 중위소득의 60%까지 상향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 기준 】

(단위 : 원/월)

2026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 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청년월세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자료: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다만,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수반되는 만큼 재정규모에 대한 추계 및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취지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인 반면, 기획예산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他 아동 지원사업과의 중복, 노인·장애인 가구 등 他 유형 가구와의 형평성, 현행 복지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9) 기획예산처는 현재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을 지급 중으로 정책 중복 소지가 있고, 아동 가구에 대해서만 특례 지원시, 노인·장애인가구 등 他 취약가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합성 훼손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